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(이하 "의사국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- 제3조(조직)
-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,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 - 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, 감독 한다.
 -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며,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 -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의안연구관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직원의 파견요청)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